

< 변경 대비 표 >

1. 변경 대상 투자신탁 : 키움 퇴직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제A-1호[국공채]
2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1월 18일
3. 주요 변경 사항 :
 - 투자위험등급 변경(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→ 5등급 낮은 위험)
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(수익률 변동성 0.43% → 0.74% 등)
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4. 변경내용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용어 변경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
부칙	<신설>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<투자결정시 유의사항>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

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효력발생일	-	<u>2023년 1월 18일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 투자위험등급 변경(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→ 5등급 낮은 위험)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<u>0.43%</u> 로 6등급 중 <u>6등급</u> 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<u>0.74%</u> 로 6등급 중 <u>5등급</u> 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) 수시공시 나. 수시공시	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</u>)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용어변경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	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
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효력발생일	-	2023년 1월 18일